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합장 연임 기준 개정 및 임원 결격사유 확대 등 >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16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조합장 연임 기준 개정	3
2. 임원 결격사유 확대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한 처분 내용 통보	11
IV . 입법의 재정영향	21
[참고자료]	22

I. 제안경위

1. 제안자: 신장식 의원 등 10인

2. 제안일: 2026. 2. 12.

3. 회부일: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조합에서 보궐선거를 기회 삼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재직 중에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

니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신설, 제51조제1항, 제17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조합장 연임 기준 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조합장이 연임하는 경우 조합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
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때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
장으로 선출되는 때에는 연임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 ④ (생략) <u><신설></u>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연임하는 경우 조합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때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때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이하 생략)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비상임인 조합장은 1회 연임¹⁾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장의 재임·연임의 기간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 등은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궐선거를 기회로 조합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회피할 여지가 있음.

-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는 3차례 역임했던 전임 이사장이 보궐선거를 통해 또 취임하거나, 3선 이사장이 마지막 임기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남은 기간 대리인을 당선시켰다가 중도 하차하게 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4년의 임기를 3번 연임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 등 연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으며,²⁾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새마을금고법」 개정('23. 10. 12.

1) 연임(連任)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 강화를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3.10.4.)

시행)을 통해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규정³⁾을 신설하여 중도 사퇴 등의 편법을 이용해 연임제한을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타 업권에 비해 상호금융권의 조합 임원에 대한 연임제한 및 결격요건 등의 규정이 느슨하여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는 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을 목적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편법적 연임제한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⁴⁾ 등의 “상호 금융권 제도개선 방안”⁵⁾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음⁶⁾.

< 상호금융권 조합장(이사장) 연임 관련 규정 >

구 분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조합장 임기		4년				
연임 제한	상임	2회 연임 可				
	비상임	2회 연임 可	2회 연임 可	1회 연임 可	제한 無	2회 연임 可
	연임 제한 회피 방지 규정	연임 제한 회피 방지 규정 無				규정 ○

자료 :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2025. 12.)를 편집

3) 「새마을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 4) ① (1) 잔여임기 2년 이하 조합장이 중도퇴임시 1회 재임으로 간주,
(2) 임기 만료 조합장 2년 내 조합장 선임시 연임으로 간주 (새마을금고 既도입)

5) 금융위원회, 2025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2025.12.22.)
- 관계부처(참석)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6) 금융위원회 : 2026년에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장의 연임 여부는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⁷⁾과,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해서 두 차례까지는 더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고 그 뒤에 연속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만 금지하는 규정”이며, 선거를 기준으로 새로운 당선이 있었다면 그 당선 및 임기 개시로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⁸⁾에 따라 현재까지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여 왔다는 설명임.

□ 현 조합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여 다른 조합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한 후 다음 선거에서 종전 조합장이 재선출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연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조합장이 임기만료 이전 중도 사퇴하는 방식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중도 사퇴 후 재선출의 방법으로 연임 횟수 제한을 회피

7)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관리규약에 정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위배되는지는 동별 대표자 선출이 유효한지가 아니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제18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소외인이 그 임기 동안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18대 임기도 재임 횟수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8) 법제처19-0043(2019.2.1.)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2년 이상 재임한 경우에는 임기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 이후 2년 이내에 재선출되면 연임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기간의 조합장 재임에 따른 비리의 발생이나 조합의 사유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연임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50조제1항 전단은 조합장 임기 4년 중 후반부 2년에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임기 전반 2년 이내에 퇴임한 경우의 해석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임기 전반 2년 이내에 퇴임한 경우는 재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임기 만료일 2년 직전에 사임하여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여 안정적인 조합 운영에 저해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임.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 따라 현행 조합장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을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임기만료일 2년 이전에 퇴임한 경우를 재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할 경우 입법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50조제1항 후단은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으로 선출된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임기만료 후 2년이 경과한 후 선출되면 연임이 아닌 신규선출로 간주될 수 있어 같은 조합장이 의도적으로 2년 이상 공백을 두고 재출마하여 연임 제한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조합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 간주 기간을 조합장의 임기(4년)와 같이 하는 등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조합장의 총 재임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하는 방안⁹⁾에 대한 연구결과⁹⁾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6년 4월 기준 현재 재임중인 수협 단위조합 조합장의 총 재임횟수를 살펴보면, 총 91명 중 4회 재임(2인, 2.2%), 3회 재임(14인, 15.4%), 2회 재임(34인, 37.3%), 1회 재임(41인, 45.0%)임.

-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조합장의 재임과 연임 횟수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2년이라는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재임과 연임 산정 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여 개정안에 따라 재임·연임 관련 사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¹⁰⁾되는 조

9) 이상복, 「상호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 (서강법률논총)(2026.2.), p.233

10) (예시 1) 임기 4년 중 2년 이후에 퇴임한 조합장(1회 재임 간주)이 2년 전에 퇴임한 조합장(재임 미간주)에 대한 반발 우려

(예시 2)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선출되는 조합장(1회 연임)이 임기 만료 후 2년 이후에 선출되는 조합장(연임 미간주)에 대한 반발 우려

조합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입장을 제시함.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권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논의를 거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농협·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이사장) 연임을 제한하고, 농협·수협 등 상호조합에 편법적 연임제한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
이므로, 해양수산부는 조합장의 재임과 연임 산정, 총 재임기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수협중앙회는 단위조합에서 새마을금고와 같이 연임 회피 등 유사사례가 발생한 전례가 없으며, 개정안에 따라 조합장의 출마가 제한되는 것은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유사한 취지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819)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824)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조합장 임기내 사퇴 현황 >

연도	사퇴건수	사퇴유형
2025	1건	선거법 위반 범죄(1)
2024	1건	사망(1)
2023	1건	선거법 위반 범죄(1)
2022	2건	자진사퇴(1), 선거법 위반 범죄(1)
2021	3건	자진사퇴(2), 선거법 위반 범죄(1)

자료: 수협중앙회

※ 2021년(2건), 2022년(1건) 자진사퇴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한 사례 없음

2. 임원 결격사유 확대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한 처분 내용 통보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①직무 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퇴직 임직원으로서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퇴직 임직원으로서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 해양수산장관과 중앙회 회장으로 하여금 퇴임·퇴직 임직원 등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조합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170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

<신 설>

6의4. 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

7. ~ 13.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이었던라면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
 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
 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
 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0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의 통보) ① 해양수산부
 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조합
 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던라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중앙회 또
 는 해당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
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
 법」 제84조에 따른 임원의 개
 선(改選) 또는 직무정지
 2. 제146조제3항제2호, 제170조제
2항제2호 또는 「신용협동조합
 법」 제84조에 따른 직원의 징

	<u>계면직 또는 정직</u> <u>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조합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 ☐ 현행법은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¹¹⁾와 해양수산부장관의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¹²⁾ 규정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징계 건수는 개선·징계면직 26건(중앙회 2, 조합 24), 직무정지·정직은 52건(중앙회 3, 조합 49)으로, 임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됨

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③ 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12)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집행의 정지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에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임원 결격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 및 단위조합 징계면직 및 정직 처분 건수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중앙회	개선·징계면직	-	2	-	-	-	2
	직무정지·정직	-	2	-	-	1	3
조합	개선·징계면직	6	8	3	4	3	24
	직무정지·정직	7	12	20	6	4	49

자료 : 수협중앙회

또한, 재임 또는 재직 중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원 선임이 제한되지만,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이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데 제한이 없어 결격사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앙회	징계면직	-	-	1
	정직	-	-	-
조합	징계면직	-	-	-
	직무정지	1	2	5

자료 : 수협중앙회

한편, 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는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¹³⁾을 통해 임원 자격제한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¹⁴⁾하고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퇴직자 제재근거를 신협과 새마을금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 상호금융권 업권별 임원자격 제한(퇴직자 제재 포함) 관련 규정 >

구 분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	지배구조법
임원 자격 제한	정직 이상	면직			정직 이상	문책 이상
퇴직 임직원 제재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경과기간	정직: 6년 면직: 7년	-			정직: 6년 면직: 7년	없음

자료 :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2025. 12.)를 편집

개정안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고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한 사항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상호금융권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건전성과 조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신협과 수협 간의 제도 운영상의 차이,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금융위원회, 2025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2025.12.22.)

- 관계부처(참석)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14) - 상호금융권 자격제한 기간: 직무정지(정직) 4년(신협·금고), 개선·해임(면직) 5년(공통)

- 지배구조법상 자격제한 기간: 문책·감봉 3년, 직무정지(정직) 4년, 해임(면직) 5년

- 첫째, 상호금융기관간 임원 결격 사유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원 자격 제한 사항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원을 전제로 한 엄격한 결격사유를 수협 임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규율대상 직무와 제한 강도 사이의 정합성이 저하된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새마을금고¹⁵⁾와 신협¹⁶⁾은 지역 주민 대상 금융사업자로서 성격이 강한 조직체로서 임원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수협¹⁷⁾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으로

15) 「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¹⁾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6)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사업)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漁家) 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 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어업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유통·가공하는 경제사업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음.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합은 상임이사가 신용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조합의 조합장은 신용사업 이외에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조합장에게 직무정지까지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임.

- 둘째,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은 징계면직 또는 직무정지 등에 관한 임원 결격 사유를 개별법과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로 규정¹⁸⁾하여 금전적 사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로 한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 할인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의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문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葬祭事業)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0.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에서 지구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借款事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18)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정하고 있음.

수협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최근 5년간 직무정지·정직 처분 사유를 보면, 중앙회의 경우 전체 3건 중 금전적 사유는 0건, 단위조합의 경우 총 49건 중 금전적 사유는 6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직무정지·정직 처분의 모든 사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임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균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수용할 경우 직무정지·정직 관련 사항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되, 금전적 사유의 경우만 해당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최근 5년간 유형별 직무정지·정직 처분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중 양 회	금전적 사유	-	-	-	-	-
	기 타	-	2	-	-	1
조 합	금전적 사유	1	1	-	1	3
	기 타	6	11	20	5	1

자료 : 수협중앙회

- 셋째,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51조제2항에서는 현직 임원이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¹⁹⁾하고 있으나,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은 당연퇴직의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결격사유 중 안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한 취지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819)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824)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회·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역량 있

19)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임원 선출 등 조합 운영의 건전성 확보, 대내외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임원 결격사유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수협중앙회는 직무 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은 여타 형사상 처벌(벌금형 선고 확정 후 2년 또는 4년)과 비교할 때 처분의 경중을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²⁰⁾.

문 의 처

02)6788-5419

20)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산림조합법」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만료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삭제 <2020. 3. 24.>
9.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
용 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
니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
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
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
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양회의 사업
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
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7. 삭제 <2023. 4. 11.>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

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 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15.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람

1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에게 제1항(제12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금고와 중양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 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